소식 1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- 66호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(안 Ⅱ. 1. 아)

1)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 표시 면제 조건 구체화

나. 개별표시사항 중 일부 규정 개정(안 Ⅲ. 1. 가)

1)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등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등 조문 정비

다.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(안 Ⅲ. 2. 가,『별지 1』1. 가, 바)

1)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"향료"로 통합됨에 따라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행정예고(공고 제2022-295호, '22.6.30.)

2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(비대상, '22.6.29.)

소식 2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76호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, 로열젤리 등 식품별 기준 ·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[안 제2. 4. 3) (7) ③, 제6. 3. 2) 가) (6) ③]

1) 식품 제조 · 조리 중 해동된 냉동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필요
2) 냉동상태로는 분할하기 어려운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
3) 해동된 냉동원료의 보관 중 위생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나. 로열젤리의 기준 · 규격 개선[안 제5. 22. 22-2 5) 로열젤리 (2) 및 (3)]

1) 단순 채집하여 판매하는 생로열젤리의 생산 특성을 고려한 기준 · 규격 개선 필요
2) 로열젤리의 수분 및 조단백질 규격을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
3) 제품의 특성과 국제규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· 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

다. 곰팡이독소 기준 재정비[안 제2. 3. 5) (3) ①, 제2. 3. 5) (3) ⑤, 제5. 1. 5) (12), 제5. 16. 16-7 5) (9), 제7. 6. 3)]

1) 곰팡이독소 기준적용 대상 판단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식품과 적용범위의 명확화 필요
2)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 식품 중 '기타식품'을 명확히 규정하고, '커피콩'의 명칭을 제1. 4. 식품원료 분류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일하며, 과자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적용 범위 개정
3) 곰팡이독소 기준적용 대상식품과 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라. 식품원료 목록 정비[안 별표 1, 별표 2]

1)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, 품목명, 기타명칭, 학명,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
2) 그물베도라치(Dictyosoma burgeri), 긴꼬리벵에돔(Girella melanichthys), 풀반지(Thryssa hamiltonii) 등 23품목을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[별표 1] 2.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
3) 감귤 잎(Citrus unshiu S. Markov. / Citrus reticulata Blanco)을 [별표 2]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
4)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(7품목), 학명수정(26품목), 사용부위 명확화(16품목) 등 식품원료의 목록

을 정비

5)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

마.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[안 별표 4 중 (9) 델타메트린, (21) 디클로르보스, (26) 디페노코나졸, (29) 디플루벤주론, (31) 마이클로뷰타닐, (32) 말라티온, (35) 메토밀, (38) 메탈락실, (61) 비펜트린, (66) 사이퍼메트린, (67) 사이플루트린, (68) 사이할로트린, (85) 에토펜프록스, (93) 오메토에이트, (101) 이미다클로프리드, (112) 카벤다짐, (116) 카탑, (125) 클로로탈로닐, (133) 테부코나졸, (135) 터부포스, (147) 트리포린, (149) 트리플루미졸, (150) 티아벤다졸, (162) 페니트로티온, (171) 펜프로파트린, (178) 폭심, (183) 플루아지포프-뷰틸, (186) 프로클로라즈, (192) 프로피코나졸, (200) 헥사코나졸, (201) 헥시티아족스, (206) 클로르페나피르, (208) 테부펜피라드, (212) 플루페녹수론, (218) 디메토모르프, (227) 아세타미프리드, (228) 아족시스트로빈, (230) 크레속심메틸, (231) 클로르플루아주론, (233) 펜사이큐론, (235) 포스티아제이트, (236) 피리프록시펜, (237) 피메트로진, (238) 플루디옥소닐, (239) 플루아지남, (242) 루페뉴론, (248) 아바멕틴, (249) 에마멕틴 벤조에이트, (251) 에톡사졸, (253) 이미벤코나졸, (259) 피리메타닐, (273) 밀베멕틴, (275) 뷰타클로르, (283) 아시벤졸라-에스-메틸, (285) 아크리나트린, (290) 인독사카브, (301) 펜헥사미드, (302) 포세틸-알루미늄, (309) 플루톨라닐, (317) 하이멕사졸, (321) 디노테퓨란, (325) 사이아조파미드, (326) 아세퀴노실, (331) 카펜트라존에틸, (332) 클로티아니딘, (333) 테부피림포스, (334) 트리넥사팍에틸, (335) 트리플록시스트로빈, (337) 티아메톡삼, (338) 티아클로프리드, (345) 피라클로스트로빈, (352) 메톡시페노자이드, (353) 메트코나졸, (355) 스피로디클로펜, (356) 에타복삼, (357) 디티오카바메이트, (361) 테플루트린, (373) 스피로메시펜, (380) 피리달릴, (391) 만디프로파미드, (394) 비스트리플루론, (395) 플루오피콜라이드, (399) 사이플루메토펜, (403) 메타플루미존, (404) 메트라페논, (405) 사이에노피라펜, (407) 아이소티아닐, (408) 스피네토람, (409) 아미설브롬, (410) 옥솔린산, (415) 크로마페노자이드, (421) 레피멕틴, (423) 피콕시스트로빈, (424) 피리플루퀴나존, (426) 아메톡트라딘, (428) 플루오피람, (430) 설폭사플로르, (431) 아이소피라잠, (433) 사이안트라닐리프롤, (439) 스피로테트라맷, (441) 피리벤카브, (453) 만데스트로빈, (458) 사이클라닐리프롤, (459) 피플루뷰마이드, (460) 피카뷰트라족스, (461) 벤조빈디플루피르, (471) 테트라닐리프롤, (499) 플루티아셋-메틸, (500) 피디플루메토펜. (501) 스트렙토마이신, (502) 발리다마이신에이, (508) 메펜트리플루코나졸, (509) 브로플라닐라이드, (511) 옥시테트라사이클린, (512) 플로메토퀸, (513) 아사이노나피르, (514) 아피도피로펜, (523) 스피로피디온, (524) 플루피리민]

1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등록(예정)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

2) 델타메트린 등 11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

3)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

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바.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 5 중 (18) 설파제, (51) 쿠마포스, (103) 플루닉신, (118) 사이퍼메트린, (181) 디클로르보스, (184) 메토밀, (186) 클로르피리포스, (188) 프로폭서, (189) 퍼메트린, (193) 아나코린, (194) 에페드린]

1)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
2)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중복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정비
3)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·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사. 축 ·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 6 중 (8) 디클로르보스, (10) 메토밀, (21) 사이퍼메트린, (62) 프로폭서, (137) 인독사카브, (138) 티아클로프리드, (139) 플루벤디아마이드]

1)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
2) 인독사카브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
3)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중복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정비
4)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아.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[안 제8. 3. 3.1 3.1.3 가. 7), 제8. 3. 3.4 3.4.1 가, 제8. 7. 7.1 7.1.1 가~라, 제8. 7. 7.1 7.1.3 7.1.3.110~111, 제8. 7.3 7.3.1 7.3.1.8, 제8. 7. 7.3 7.3.1 7.3.1.11, 제8. 7. 7.3 7.3.2 7.3.2.19, 제8. 8. 8.3 8.3.1, 제8. 8. 8.3 8.3.10, 제8. 8. 8.3 8.3.20, 제8. 8. 8.3 8.3.24, 제8. 8. 8.3 8.3.74, 제8. 8. 8.3 8.3.75, 제8. 9. 9.2 9.2.6, 제8. 9. 9.5 9.5.2, 제8. 9. 9.9 9.9.1, 제8. 9. 9.9 9.9.2, 제8. 11. 11.1, 제8. 11. 11.3]

1)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
2) 보존료 시험법의 정량시험 계산식 개정
3) 타르색소 중 모사염색법 개정
4) 농산물 중 3종 농약 시험법 신설
5)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 개정
6) 국내 허가사항에 맞게 동물용의약품 물질명 수정,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및 개정
7) 오크라톡신 A 시험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시험법 개선
8) 벤조피렌 시험법 적용 범위 명확화
9) 방사능 검사 핵종별 시험시료 일치를 위한 시험법 개정
10) 개별 시험법에서 제시한 시험용액과 중복되는 표준용액 삭제 및 용어통일
11)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자. 문구 명확화, 타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사항[안 제5. 6. 3) (4), 제5. 7. 7-1 3) (1), 제5. 9. 9-1 3) (1), 제5. 9. 9-1 4) (2), 제5. 9. 9-2 3) (1), 제5. 9. 9-6, 제5.

11. 11-1 3) (5) 및 (6), 제5. 11. 11-1 4) (1), 제5. 13. 13-6 4) (3), 제5. 17, 제5. 18, 제5. 19, 제5. 23. 23-2 4) (2), 제7. 4. 1) (4) ③의 삭제, 제7. 6. 7) (1)]

1) 기준 · 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 방지하고,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 · 규격 개정 필요
2) 두부류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해수의 수질기준 근거 법령(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3) 식용유지류 제조시 복합정제공정을 거치는 추출유의 범위 명확화
4) 다류와 커피에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초산에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
5) 액상차의 정의 중 성상 명확화
6) 발효음료류를 멸균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도록 기준 · 규격 개정
7) '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' 식품유형 명칭을 복수로 정할 수 있도록 '균형영양조제식품' 명칭 추가
8) 태움용융 · 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개정
9)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, 알가공품류, 유가공품류의 주원료(축산물)에 적용되는 근거법령(축산물 위생관리법) 명시 등
10) 즉석섭취식품의 정의 중 문구 개정
11) 검체 채취 요령에서 정하고있는 선박 벌크검체 채취 방법을 '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'으로 이관하여 규정 적용 명확화
12)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 · 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생산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2-322호(2022. 7. 18. ~ 2022. 9. 19.)
2) 식품 ·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
   가)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: 2022. 9. 22.
   나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: 2022. 9. 27.
   다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: 2022. 9. 29.
   라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방사능분과 심의: 2022. 9. 29.
   마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: 2022. 9. 30.
3) 규제심사
   가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: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-2840호(2022. 7. 8.)

소식 3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77호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영양강화제로 허용된 니코틴산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니코틴산 사용이 필요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,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기구등의 살균 · 소독제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, 특수의료용도식품, 건강기능식품,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(Ⅱ. 5. 가. 니코틴산)

나. 기구등의 살균 · 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네오데칸산 등 22개 성분 삭제(Ⅲ. 1. 1))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2-171호, 2022.4.13. ('22.4.13.~'22.6.12.)

2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('22.4.6.) : 심사대상

3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('22.7.14.) : 원안의결

4) 자체규제심사('22.9.5.) : 원안의결

5)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('22.9.8.) : 의견없음

6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('22.10.14.) : 비중요 규제

소식 4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- 78호

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

1. 개정 이유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(이하 "전담 관리원")의 지정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절차, 활동, 수당지급 등 필요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전담 관리원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1) 전담 관리원을 추천 ·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(신청)서를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(이하 "각 기관")의 장에게 제출함

2) 각 기관의 장이 지정 결정 시에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함

3) 전담 관리원 지정 시에는 지정서 및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함

나. 전담 관리원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1)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,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

다. 전담 관리원 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1)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2) 전담 관리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· 판매업소 출입 시에는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

라. 전담 관리원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1) 전담 관리원의 활동수당은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일 50,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각 기관의 장이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